

2024년
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1. 감사의 목적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와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업무를 감사함으로써,
- 소관업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,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,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함.

2. 감사기간 및 장소

- 기 간 : 2024. 6. 12.(수) 09:30
- 장 소 :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

3. 감사대상 기관

-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: 의회사무국

4. 감사대상 사무

- 2023. 5. 1. ~ 2024. 4. 30.까지 처리된 사무

5. 감사위원회 편성

- 감사위원 : 9명(의회운영위원회)
 - 위 원 장 : 김영태
 - 간 사 : 김근한
 - 위 원 : 김정도, 박세채, 신용하, 이명희, 이정희, 장세구, 추은희
- 감사보조 직원
 - 전문위원 : 박영훈
 - 직 원 : 박한기, 김채린, 최수연

6. 감사방법

- 증인선서
- 감사상 필요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청취
-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 실시
- 관련서류 제출

7.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증인

기 간	대 상	수 감 내 용	출석요구증인
6. 12.(수) 09:30	· 의회사무국	· 개의 선언 및 위원장 인사 · 증인 선서 ·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 청취	선서 및 감사 의회사무국장 참고인(각 담당)

8. 감사실시 결과

소 관 별	처리구분	지 적 사 항
의회사무국	시 정	1. 시간외근무(초과근무) 관리·감독 필요 ○ 사무국 직원들이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조기출근 및 야간근무를 할 경우 직원들이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신청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, 허위로 신청하여 수당을 받지 않는지 등 감독이 필요함. ○ 시간외근무에 대한 적절한 지침 혹은 관리·감독을 위한 계획 등을 세울 필요가 있음.
	개 선	2. 의회사무국 내 물품 관리 철저 ○ 의회사무국은 특성상 관리하는 물품(가구, 장비, 노트북 등)들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. ○ 구입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 사무국 소유의 물품들의 현황을 정리한 ‘물품관리현황’을 제대로 정비하여야 하며,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시 수의계약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여 지켜야 할 것임.

소 관 별	처리구분	지 적 사 항
의회사무국	개 선	<p>3. 홍보비 지급 기준 수립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홍보비 지출이 큰것에 비해 의회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게 높지 않다고 체감됨.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하는 세밀한 기준을 세우기 바람.
		<p>4.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등급 상향을 위한 교육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외부평가 등급이 낮았음. ○ 형식적인 노력이 아닌 실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등이 필요함.
	권 고	<p>5.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지원시 적극적인 보좌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난 간담회 이후 신공항 특위의 존폐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 이후 진척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빠른 시일 내 논의토록 해야 할 것임. ○ 신공항 특위를 지원할 때 담당 전문위원실에서도 세심하게 보좌해야 할 것임.
		<p>6.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교육 등 준비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, 올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제도가 생기며 이에 따른 교육 등 의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대응해 주길 바람.
		<p>7.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용방안의 지속적인 연구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지 2년정도 지난 현재, 우리 의회는 정책지원관 배치, 교육 등 다양하게 적용해보고 여러 방안을 연구해본 것으로 앎. ○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하여, 개별 정책지원관 조례 등을 검토해보고 의원들 또한 지원관과 관련된 교육 등을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. ○ 정책지원관과 의원들의 좋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올바른 안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·노력해 주기 바람.